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2006. 4. 18 : 사천시장 제출

나 2006. 4.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24호)

다 2006. 4. 25 :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회계과장 류재석)

### 가 제안이유

- 현재의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안 제17조 내지 제22조)
-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 (안 제23조 및 제40조)
- 변상금의 부과 및 납부 (안 제61조 및 제62조)

###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군호)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사항 중“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변경하고, 전세금 납부방법의 전세대상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전세금 예치방법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대부료 납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 조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 검토의견으로는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의 개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2005. 8. 4 법률 제7665호) 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 없음